

조례안예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89호

창원시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창원시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0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

1. 자치법규명

「창원시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으로 실종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종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마.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jeonhr1@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성보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9
----------	-----

발의연월일 : 2023. 8. 29.

발 의 의 원 : 성보빈 · 강창석 · 구점득 · 권성현 · 김경수
김경희 · 김남수 · 김묘정 · 김미나 · 김수혜
김우진 · 김혜란 · 남재욱 · 박강우 · 박선애
박승엽 · 박해정 · 서명일 · 서영권 · 오은옥
이정희 · 이종화 · 이해련 · 전홍표 · 정길상
정순옥 · 진형익 · 최정훈 · 한은정 · 홍용채
황점복 의원(31명)

찬 성 의 원 : 손태화 의원(1명)

1. 제안이유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으로 실종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종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마.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창원시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 아동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실종 당시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실종아동”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분리된 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대책

3. 실종아동의 현황 및 실태조사

4.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실종아동의 가족 지원

3. 실종아동의 복귀 후 사회적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서 등 관계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기여한 공로가 현

저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 ~ 7. (생략)

제3조의2(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① 실종아동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하고, 실종아동의 날부터 1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관련 행사·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복귀와 복귀 후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